

2015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 1180, 1181 호
- 다. 제출일자 : 2016. 5. 10.
- 라. 회부일자 : 2015. 5. 16.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B/A))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2015	18,364	18,364	19,254	19,175	79	19	60	99.6

- 세입예산현액은 183억 64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92억 54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91억 75백만원을 수납하고, 79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그 중 19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6천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9.6%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5	186,561	558	1,546	-	-	2,943 (-2,943)	188,665	166,725	19,153	19,013	140	2,787 (1.5%)

- 당초 예산액 1,865억 6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58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15억 46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886억 65백만원으로, 이중 88.4%인 1,667억 25백만원을 지출하고 10.1%인 191억 5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27억 8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 예비비

○ 이용

- 예산 이용은 없음.

○ 전용

- 예산 전용은 없음

○ 이체

- 예산 이체는 18건에 29억 42백만원으로

-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1억 30백만원
- 특수구조대 운영 1억 62백만원
- 소방항공대 운영 15억 21백만원
- 수난구조대 운영 9억 18백만원
- 산악구조대 운영 2억 11백만원임.

○ 변경

- 예산의 변경은 없음

○ 예비비

- 예비비 지출은 1개 사업에 15억 46백만원으로

-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사업 15억 46백만원임.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190억 12백만원, 사고이월 1억 4천만원의 총 이월사업비는 191억 5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886억 65백만원 대비 10.1%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7억 87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886억 65백만원 대비 1.5%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15	188,665	2,787	1.5%	

- 발생원인별 내역

-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 26억 69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51백만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67백만원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 결산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5	18,364	18,364	19,254	19,175	79	19	60	99.6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183억 64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92억 54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91억 75백만원을 수납하고, 7천 9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그 중 1천 9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6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9.6%임.

나) 세수추계(결산서 p.12~14)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현액 대비 104.8%로 총 8억 89백만 원이 추가 징수 결정되었으며 일부세입 중 세수추계 차가 크게 발생한 항목들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과다한 항목

(단위: 천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b)-(a)	비고
정상적 세외수입					
증지수입	176,503	105,670	105,670	△70,833	소방시설업 등록·변경 및 방염성능시험 등 증지수입 감소
기타사업수입	25,355	61,073	61,073	35,718	소방학교 수탁교육 교육비 및 인원수 증가
기타이자수입	1,440	40,054	39,057	38,614	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발생 이자 증가 등
임시적 세외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207,248	123,753	117,307	△83,495	납품기한 경과 부과 지연 배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에 따른 위약금 감소
과태료	416,167	545,775	523,820	129,608	작동기능점검대상 증가로 인한 과태료 증가
불용품매각대	321,706	796,767	796,767	475,061	소방안전교부세 및 국고보조 금지원에 따라 노후 소방차량 불용으로 불용금액 증가
지난연도수입 (과태료)	11,945	49,067	10,482	37,122	전년도 누적된 체납액이월에 따른 증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136,223	2,382,825	2,382,825	246,602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중도상환자 증가

○ 정상적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¹⁾은 예산액 1억 76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억 5백만원으로 그 차액이 7천 1백만원인데, 주된 원인은 소방시설업 등록변경 및 방염성능시험 신청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

○ 기타사업수입²⁾은 예산액 2천 5백만원 대비 3천 6백만원 증가한 6천 1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며, 차액발생 사유는 소

1) 증지수입: 방염성능의뢰, 시설업 등록 등에 따라 발생한 증지수입

2) 기타사업수입: 소방학교 수탁교육비

방학교 교육인원 증가 등이 주원인이며, 최근 3년간의 기타사업수입 현황을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현액대비 수납률 폭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세수추계가 부정확한 것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보다 과학적인 세수추계로 정확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표] 최근 3년 기타사업수입 현황

(단위: 만원)

연도별	예산현액	수납금액	현액대비 수납률
2015	2,536	6,107	241%
2014	1,673	2,672	160%
2013	2,725	3,998	147%

- 기타이자수입³⁾은 신용카드 결제통장 등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과 서울시와 우리은행 간 협약(2015.1.1.)에 따른 이자율 증가(0.1%→1.85%)로 인해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세입의 증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 본 세입항목 역시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자율 변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세수추계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료됨.

3) 기타이자수입: 법인카드 결제통장 등 발생이자 수입

○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변상금 및 위약금의 경우, 예산액 2억 7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억 23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것은 각 사업별 계약업체에 대한 납품일시 및 준공기일 준수 독려 등에 따라 위약금이 다소 감소했기 때문으로, 업체의 계약준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

- 다만, 계약과정에서 무리한 납품기일 또는 준공기일 설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표] 2015년도 변상금 및 위약금 세부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방관서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금액	징수금액	지체일수	비고
1	소방재난본부	인체제독소 1세트 제조 구매	제한경쟁	55,000	6,683	81	지연배상금
2	소방재난본부	차량제독소 2세트 구매	수의계약	41,150	1,235	20	지연배상금
3	소방재난본부	재난홍보 영상장비 관련 추가 구매	조달구매	3,980	251	42	지연배상금
4	소방재난본부	자동제세동기 구매	일반경쟁	598,950	61,991	69	지연배상금
5	소방재난본부	2015년 소방공무원 및 신규자 피복 조달구매(활동복조끼)	조달구매	10,153	137	9	지연배상금
6	소방재난본부	환경미화원 대기실 시설물 이전 용역	조달구매	4,400	297	27	지연배상금
7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대장비 5종 구매	제한경쟁	51,434	1,003	13	지연배상금
8	소방재난본부	미니주택 안전교육모형 제작 구매	수의계약	14,400	1,210	56	지연배상금
9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장비(발화점측정 시스템 등 4종) 구매	제한경쟁	58,300	787	9	지연배상금
10	소방재난본부	동물포획장비(장갑) 구매	수의계약	29,753	312	7	지연배상금
11	서울소방학교	구급기자재 납품	일반경쟁	89,504	2,417	18	지연배상금

12	소방방재센터	신지령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	조달구매	1,575,200	35,442	9	지연배상금
13	119특수구조단	해상구조용 구명보트 구매	수의계약	21,613	1,329	41	지연배상금
14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장비 구매	수의계약	10,292	108	7	지연배상금
15	119특수구조단	야간비행 안전장비 구매	일반경쟁	95,370	1,001	7	지연배상금
16	강동소방서	사무공간재배치 설계용역	수의계약	5,500	124	9	지연배상금
17	강동소방서	2015년 상반기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용역	수의계약	6,586	49	3	지연배상금
18	강동소방서	2015년 상반기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용역	수의계약	9,878	74	3	지연배상금
19	구로소방서	장애인용 승강기 구매	조달구매	43,289	2,857	44	지연배상금
합 계				2,724,752	117,307		

※전체 19건 중 제한경쟁 3건, 수의계약 8건, 조달구매 5건, 일반경쟁 3건

- 한편, 2015년도 변상금 및 위약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표] 참조), 전체 19건에 대한 계약방법이 제한경쟁 3건, 수의계약 8건, 조달구매 5건, 일반경쟁 3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 제한경쟁과 수의계약의 경우는 특정기술력과 납품능력을 보유했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지연이 발생했다는 것은 계약 당시 업체검증이 소홀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 이 중 ‘인체제독소 1세트 제조구매’와 ‘해상구조용 구명보트 구매’의 지체일수가 각각 81일과 41일이나 되는 것은,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소방장비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 소방장비 납품기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구매계약부터 납품기일 까지 관련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음.

○ 과태료수입은 예산액 4억 16백만원 대비 1억 29백만원 증가한 5억 45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주된 증가사유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2015.1.9)시행됨에 따라 작동기능점검⁴⁾ 대상시설물이 11,909개소에서 51,407개소 증가한 63,316개소로 확대되었고,

이들에 대한 점검업체들의 점검결과 보고에서 허위보고, 제출기한 미이수, 기술인력 미참여 점검 등 사유로 과태료 부과⁵⁾ 건수가 증가한 것에 기인함.

- 그러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미 2014. 2. 6. 입법예고 된바 있어, 예산 편성 시 충분히 반영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바 보다 과학적인 세수추계가 필요하다 하겠음.

4) 작동기능점검: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것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파.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0호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

- 다음으로, **지난연도수입(과태료)**의 경우 전년도 누적된 체납액이 이월됨에 따른 것인데 징수목표액을 4천 9백만원으로 했음에도 실제 수납액이 1천만원에 그쳤다는 것은 징수노력이 부족했다 판단되므로, 장기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의 인센티브 부여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임.
- 다음으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예산액 21억 36백만원 대비 2억 46백만원 증가한 23억 82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차액 발생사유는 전세자금 지원을 받은 무주택 소방공무원이 만기 도래 일 이전에 중도 상환자가 증가함에 따른 것임.
- 아래의 [표]에서 최근 3년간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세입현황을 보면 매년 실수납율이 매년 증가(111.5%→113.4%→128.4%)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도상환계획에 대한 사전조사 등을 통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겠음.

[표] 최근 3년간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세입추계 현황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민간 융 자 금 회 수 수 입	2,136,223	2,382,825	111.5	1,800,130	2,041,500	113.4	2,092,667	2,687,000	128.4

○ 다음으로 과오납반환액([표]참조)을 살펴보면 당해연도는 5천만 원으로 2013, 2014회계년도 대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과오납반환액 발생은 대부분 담당자 착오부과에 따른 것으로, 과오납 발생사례가 연례 반복적이고 반환액이 증가하는 점을 볼 때 징수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과오납 발생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표] 세입결산 중 과오납반환액 현황('15~'13)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납반환액	비 고
2015년도	18,364,122	19,253,511	19,174,812	50,931	
2014년도	7,640,550	7,700,733	7,640,574	42,285	
2013년도	6,617,828	7,445,342	7,367,693	1,525	

[표] 2015회계연도 세입금 과오납 상세 현황

(단위 : 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수납액			과오납 반환액 발생사유
		수납총액	과오납액	실수납액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13-01)	213,622	243,283	5,000	238,283	○ 발생사유 : 착오부과 ○ 과오납 내용 - 당해연도 예산 지출건으로 세입이 아닌 반납처리건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216-02)	21,654	19,764	57	19,707	○ 발생사유 : 착오부과 ○ 과오납 내용 - '14.12월 상환자를 포함하여 착오부과

과태료 (223-03)	41,617	52,415	33	52,382	○ 발생사유 : 착오부과 ○ 과오납 내용 - 과세금액을 과부과 후 사전납부 완납 - 정정 과세금액 계산 후 차익금 감액
증지판매수입 (213-01)	17,650	10,566	3	10,563	○ 발생사유 : 착오부과 ○ 과오납 내용 - 민원수수료 과납부 후 일부감액
기타수수료 (213-04)	0	0.2	0.2	0	○ 발생사유 : 착오부과 ○ 과오납 내용 - 세목코드 착오부과
합 계	294,543	326,028	5,093	320,935	

다) 미수납 및 결손처분(결산서 p.12~14, p.82, p.84)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7천 8백만원으로 이중 미수납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은 5천 9백만원, 결손처분액은 1천 9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미수납액	78,698
결손처분	19,169
무재산	13,078
행방불명	4,991
시효소멸	1,100
배분금액부족	-
기타	-
다음연도 이월액	59,529
무재산	3,967
행방불명	1,200
납세태만	15,286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27,033
기타	12,043

- 상기 [표]의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된 세입과목의 경우는 과세내역별로 미수납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세입징수를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되고,

- 결손처분의 경우, 무재산과 행방불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결손처분 전에 압류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납부의무자의 소재 파악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하여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임.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5	186,561	558	1,546	-	-	2,943 (-2,943)	188,665	166,725	19,153	19,013	140	2,787 (1.5%)

가) 개 요

- 당초예산액 1,865억 6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58백만원, 예비비 15억 46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86억 65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667억 25백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인 191억 53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27억 8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19~63)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27억 87백만원이며,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은 '119안전센터신설 및 재건축' 등 8건([표] 참고)임.

[표]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소방행정과	119안전센터 신설 및 재건축 등	1,999	807 (1,074)	118	5.9%
2	소방행정과	소방활동지원	18,072	17,741	331	1.8%
3	소방행정과	기본경비	20,927	20,369	558	2.7%
4	재난대응과	한강시스템 구축	1,183	940	243	20.5%
5	안전지원과	기동장비 교체 및 보강	7,880	7,569 (140)	171	2.2%
6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2,931	2,786	145	4.9%
7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2,016	1,803	213	10.6%
8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 유무선통신 시스템 운영	5,305	5,136	169	3.2%

- ‘119안전센터 신설 및 재건축’은 노후되고 협소한 소방청사에 대한 재건축을 통해 건축물의 안정성과 소방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고덕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비에 해당함.
- 동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19억 99백만 원 중 시설비 계약심사 차액 7천 9백만원,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사 집행잔액 2천 7백만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천 1백만원 등 전체 1억 18백만원(5.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0억 74백만원(53.7%)이 명시이월 됨.

- 고덕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일정을 살펴보면(아래[표] 참조), 119안전센터 재건축공사 착공시점이 통상적인 사업추진 일정보다 상당 부분 지체되어 착공되었음을 알 수 있고,
- 또한,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사’ 예산 4천 6백만원 중 58.7%인 2천 7백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상황을 감안할 때
- 이는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표] 강동소방서 고덕119안전센터 재건축공사 사업추진 일정

○ 2014. 12. 30. : 고덕119안전센터 재건축 공사 계획 수립
○ 2015. 5. 31. : 현상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완료
○ 2015. 6. 29. : 고덕119안전센터 임시청사 이전
○ 2015. 6. 30. : 고덕119안전센터 일상감사 완료
○ 2015. 7. 30. : 서울시 계약심사 완료
○ 2015. 9. 01. : 고덕119안전센터 재건축 공사 계약
○ 2015. 9. 07. : 고덕119안전센터 재건축 공사 착공

- ‘한강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은 예산현액 11억 83백만원 중 20.5%인 2억 4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불용내역은 한강교량 영상감시 시스템 구축 중 계약심사 차액 6천 6백만원, 낙찰차액 1억66백만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천 1백만원에 따른 것임.

- 이는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다소 과다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바,
 - 사업주관부서는 예산편성에 앞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보다 정확한 소요예산이 산출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민방위정보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은 국가비상 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파를 위한 민방위정보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24시간 상시 가동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16백만원 중 10.6%인 2억 1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는 계약심사 차액 1억 6백만원과 낙찰차액 1억 7백만원에 해당한다고는 하나,
 - 최근 5개년 ‘민방위정보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을 보면(아래 [표]참조) 매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함에도 예산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며,
 - 계약심사 차액이 1억 6백만원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과다예산 편성에 과다설계가 이루어졌다는 방증이므로 설계의 정확도를 높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표]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예산 및 집행 현황('15~'11)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불용률
2015년도	2,016,000	1,802,754	213,246	89.4%	10.6%
2014년도	1,274,400	1,157,957	116,443	90.9%	9.1%
2013년도	1,509,400	1,368,878	140,522	90.7%	9.3%
2012년도	1,749,000	1,578,969	170,031	90.3%	9.7%
2011년도	1,135,909	912,462	223,447	80.3%	19.7%

다) 예산전용

- 예산의 전용은 없음.

라) 예산이체 (결산서 p.70)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당해연도 예산이체는 5개 사업 총 18건에 29억 43백만원을 이체하였으며, 이는 2015년 1월 1일자로 재난대응과와 본부 119 특수구조단에서 조직이 개편되어 현장대응단(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이 신설되고 119특수구조단이 4개 사업소로 분리됨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로 이해됨.

- 이처럼 전문적·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23개 전체 소방서에 ‘현장대응단’을 신설하고 119특수구조단을 전문화 시킨 것은 현장지휘 및 대응력 강화에 목적이 있었던 만큼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중간점검 및 중간평가가 필요해 보임.

[표] 2015회계연도 예산이체 내역

(단위: 천원)

연번	과 목			이체금액		이체승인 일자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2,942,789	2,942,789		
1	재대응과	화재조사업무의전문화	201-01 사무관리비	65,000		‘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현대응단	화재조사업무의전문화	201-01 사무관리비		65,000		
2	재대응과	화재조사업무의전문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5,200		‘15.01.17.	2015년 1월1일자 조직개편
	현대응단	화재조사업무의전문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5,200		
3	본부 119특구단	특수구조대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3,466		‘15.01.21.	2015년 1월1일자 조직개편
	119특구단 행정지원과	특수구조대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3,466		
4	본부 119특구단	특수구조대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		‘15.01.21.	2015년 1월1일자 조직개편
	119특구단 행정지원과	특수구조대운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		
5	본부 119특구단	특수구조대운영	401-01 시설비	14,000		‘15.01.21.	2015년 1월1일자 조직개편
	119특구단 행정지원과	특수구조대운영	401-01 시설비		14,000		
6	본부 119특구단	특수구조대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7,000		‘15.01.21.	2015년 1월1일자 조직개편
	119특구단 행정지원과	특수구조대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7,000		

7	본 119특구단	소 방 향 공 대 운 영	201-01 사무관리비	182,805		'15.01.21.	2015년 1월1일자 조직개편
	119특구단 행정지원과	소 방 향 공 대 운 영	201-01 사무관리비		182,805		
8	본 119특구단	소 방 향 공 대 운 영	201-02 공공운영비	1,196,796		'15.01.21.	2015년 1월1일자 조직개편
	119특구단 행정지원과	소 방 향 공 대 운 영	201-02 공공운영비		1,196,796		
9	본 119특구단	소 방 향 공 대 운 영	202-04 국제화여비	13,010		'15.01.21.	2015년 1월1일자 조직개편
	119특구단 행정지원과	소 방 향 공 대 운 영	202-04 국제화여비		13,010		
10	본 119특구단	소 방 향 공 대 운 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8,604		'15.01.21.	2015년 1월1일자 조직개편
	119특구단 행정지원과	소 방 향 공 대 운 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8,604		
11	본 119특구단	수 난 구 조 대 운 영	201-01 사무관리비	24,680		'15.01.21.	2015년 1월1일자 조직개편
	119특구단 행정지원과	수 난 구 조 대 운 영	201-01 사무관리비		24,680		
12	본 119특구단	수 난 구 조 대 운 영	201-02 공공운영비	448,991		'15.01.21.	2015년 1월1일자 조직개편
	119특구단 행정지원과	수 난 구 조 대 운 영	201-02 공공운영비		448,991		
13	본 119특구단	수 난 구 조 대 운 영	401-01 시설비	94,457		'15.01.21.	2015년1월1일자 조직개편
	119특구단 행정지원과	수 난 구 조 대 운 영	401-01 시설비		94,457		
14	본 119특구단	수 난 구 조 대 운 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00		'15.01.21.	2015년1월1일자 조직개편
	119특구단 행정지원과	수 난 구 조 대 운 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00		
15	본 119특구단	산 악 구 조 대 운 영	201-01 사무관리비	27,552		'15.01.21.	2015년1월1일자 조직개편
	119특구단 행정지원과	산 악 구 조 대 운 영	201-01 사무관리비		27,552		
16	본 119특구단	산 악 구 조 대 운 영	206-01 재료비	3,987		'15.01.21.	2015년1월1일자 조직개편
	119특구단 행정지원과	산 악 구 조 대 운 영	206-01 재료비		3,987		
17	본 119특구단	산 악 구 조 대 운 영	401-01 시설비	105,945		'15.01.21.	2015년1월1일자 조직개편
	119특구단 행정지원과	산 악 구 조 대 운 영	401-01 시설비		105,945		
18	본 119특구단	산 악 구 조 대 운 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3,296		'15.01.21.	2015년1월1일자 조직개편
	119특구단 행정지원과	산 악 구 조 대 운 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3,296		

마) 예산변경

○ 예산의 변경은 없음.

바) 예비비(결산서 p.77)

○ 서울소방재난본부의 201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46백 만원으로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구급차량 소독 및 구급대원 안전관리 용품, 사용된 용품폐기를 위한 폐기전용수거함 등 긴급구매로 예비비 14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음.

[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천원)

집행날짜	내역	금액	비고
합 계		1,490,223	
'15. 06. 09.	N95마스크 등 3종 구매	206,387	
'15. 06. 09.	비접촉체온계 등 10종 구매	115,966	
'15. 06. 09.	손세척알콜 등 3종 구매	22,407	
'15. 06. 13.	액체비누 등 2종 구매	14,795	
'15. 06. 15.	고막체온계 등 7종 구매	125,232	
'15. 06. 17.	손세정제 1종 구매	2,376	
'15. 06. 17.	보호마스크 1종 구매	2,905	
'15. 06. 18.	N95마스크 등 4종 구매	139,680	
'15. 06. 23.	일반마스크 등 6종 구매	181,835	
'15. 06. 24.	손세척알콜 등 2종 구매	3,385	
'15. 06. 24.	비접촉체온계 등 9종 구매	109,328	
'15. 07. 01.	라텍스글러브 등 11종 구매	147,925	
'15. 07. 06.	보호복 레벨C급 1종 구매	118,102	
'15. 07. 08.	방진방독마스크 1종 구매	299,900	

- 예비비 사용은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환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에 시민 및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감염방지용품 등을 긴급히 구매함에 따른 것으로 재난발생에 따른 부득이한 지출로 인정되나,
 - 예비비의 사용은 결산심사를 통한 의회 사후승인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비비의 사용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하고, 집행역시 시급성을 이유로 무분별한 수의계약 발주나 과다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사) 차년도 명시이월 (결산서 p.116~p.117)

- 2015회계연도 명시이월⁶⁾은 ‘119안전센터 신설 및 재건축 등’ 11건으로 예산현액 1,886억 65백만원 대비 10%인 190억 13백만원([표] 참고)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 사유별 현황([표] 참고)을 보면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4건, 소방안전교부세 추경예산 편성 3건, 사전절차지연 3건, 집행시기 미도래 1건의 명시이월이 발생함.

6)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표] 서울소방재난본부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 (과)	사업명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이월률	이월사유
합 계(11건)		52,799	19,013	155	36.0	
소방 행정과	119안전센터신설 및 재건축등	1,999	1,074	107	53.7	사전절차지연
	소방행정타운건립	19,849	580	-	2.9	사전절차지연
	성동소방서신설	6,438	992	13	15.4	사전절차지연
재난 대응과	특수구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3,783	3,037	-	80.3	국고보조금교부지연 2015.9.25
	재난대응능력향상 (황금시간 목표제 검증용역)	450	425	25	94.4	집행시기미도래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3,047	3,047	-	100.0	소방안전교부세추경 예산편성, 2015.8.4
	구급장비 교체 및 보강	2,627	2,435	-	92.7	소방안전교부세추경 예산편성, 2015.8.4
	119구급대감염관리실 설치	1,672	1,167	-	69.8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2015.9.25
안전 지원과	소방안전교육강화	1,940	885	3	45.6	소방안전교부세추경 예산편성, 2015.8.4
	소방차량 대폐차	10,076	5,021	7	49.8	국고보조금교부지연 2015.9.25
119 특수 구조단	수난구조대운영	918	350	-	38.1	국고보조금교부지연 2015.9.25

○ ‘119안전센터 신설 및 재건축 등’ 사업은 앞서 ‘집행잔액(불용액)’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강동소방서 고덕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으로, 예산현액 19억 99백만 원 중 53.7%인 10억 74백만원을 명시이월 함.

- 이는 고덕119안전센터 재건축공사 계획을 수립(2014.12.30) 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현상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 완료(2015.5.31) 후 공사 착공전 계약심사 보완 등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10억 74백만원이 명시이월 됨.

- 그러다보니 119안전센터 재건축공사 착공시점이 통상적인 사업 추진 일정보다 상당기간 지체되어 착공(2015.9.7.)되었는데, 이는 사전이행 절차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부족도 문제지만 보다 적극적인 사전절차 이행 역시 부족했다 여겨지는 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요망됨.

○ ‘소방행정타운 건립’ 사업은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소방교육 훈련시설 및 운영체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98억 49백만원 중 2.9%인 감리비 5억 8천 만원이 명시이월 됨.

- 이는 당초 설계기간이 2014년 2월~12월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중앙훈련타워 층수 규제완화(7층→15층)와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추가시간 소요로 2014년 5월~2015년 11월까지로 설계기간이 대폭 확대됨에 따른 것임.

- 소방행정타운 건립의 경우 세계최초로 소방행정, 소방교육 및 훈련, 재난대응, 재난관리 등 모든 소방력을 한 곳으로 집약시켜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중대사업인 만큼,

- 추진과정에서 일부변경이 발생 할 수는 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의욕만 앞세우기 보다는 과학적인 검토를 거쳐 집행가능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성동소방서 신설’ 사업은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재난 대응 및 재난 지휘권의 현장 도착 5분 체계 확보로 긴급재난 구조 구급 등 신속처리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기능의 소방서비스를 제공코자 소방서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 2014회계연도 당시에 도 성동소방서 신설 부지가 포함된 행당 도시개발계획(안) 고시(2014.5.1)가 지연됨에 따라 설계용역(현상설계 포함) 추진이 순연(順延)되어 설계용역비가 사고이월 되었었고 2015. 10. 15일에서야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는데,
 - 설계완료 후 일상감사(2015.11.5) 등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당해 연도에 또 다시 예산현액 64억 26백만원 중 15.4%인 9억 92백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낳고 있음.

[표] 성동소방서 설계용역 준공 이후 사업추진 현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 10. 15. : 설계용역 준공 완료○ 2015. 11. 5. : 일상감사 완료○ 2015. 11. 10. : 서울시 계약심사 완료○ 2015. 11. 27. : 입찰공고○ 2015. 12. 14. : 계약자 선정 |
|---|

- 이처럼 예산편성 시점에서 진행 중인 설계가 늦어질 것을 예

측하고도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료됨으로

- 동 사업과 같이 타사업과의 연계로 인해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경우는 타사업 주무관청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예산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재난대응능력 향상(황금시간 목표제 검증용역)’ 사업은 황금시간 목표제를 재난유형별로 검증하고, 황금시간 목표제 시행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 초동대응 역량 강화 방안과 재난사고 대응 진단체계를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5천만 원 중 94.4%에 달하는 4억 25백만원을 명시이월 함.
- 이는 연구용역 추진기간을 2015년 3월~12월까지 10개월간으로 계획(현장대응단-2240, 2015.2.13.)하였으나, 용역수행 기관인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전 협의과정에서 양질의 연구성과를 위해 용역수행 기간(2015.4.2.~2016.3.31.) 연장요청에 따른 것임.
- 그러나 명시이월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 본 사업은 이미 계약 당시부터 당연히 이월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2015.7.27.)에서 감추경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저해했다 할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연구과제의 경우는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연구과제의 범위 및 연구수행 기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계약과정에서 또는 용역 수행 중 용역기간이 변동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구급장비 교체 및 보강’, ‘소방안전교육 강화’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추경예산 편성(2015.7.27)사업이며,
- ‘소방차량 대폐차’,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수난구조대 운영’사업은 국민안전처 한시적 국고보조금 교부(2015.9.25)사업으로,
- 시기적으로 뒤늦은 예산배정이 명시이월로 이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추경예산 편성은 가급적 당해연도 내에 완료 될 수 있는 사업에 국한하고 국고보조금 교부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가용예산에 대해 교부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짐.

[표] 소방재난본부 5년간 이월사업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이월구분	건수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률 (%)	비고
2015년도	명시이월	15	188,665	19,013	154	10.1	
	사고이월	1	188,665	141	171	0.1	
2014년도	명시이월	0	-	-	-	-	
	사고이월	1	138,473	558	94	0.4	
2013년도	명시이월	0	-	-	-	-	
	사고이월	1	117,184	108	-	0.1	

아) 차년도 사고이월⁷⁾(결산서 p.118)

-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은 ‘기동장비 교체 및 보강’ 1건으로 예산
현액 78억 8천만원 대비 1.8%인 1억 4천만원([표] 참고)을
사고이월 하였음.

[표] 서울소방재난본부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 (과)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안전지원과	기동장비교체 및 보강	7,880	7,880	140	171

- ‘기동장비교체 및 보강’ 사업은 제1회 추경(2015.7.27.)에서 편성된
사업으로 노후 및 성능 저하가 심각한 펌프차 등 7종 26대를 대
체하기 위하여 예산액 78억 8천만원 중 1억 4천만원을 사고이월
하고 1억 71백만원을 불용함.

7) 사고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서 회계연도내에 지출
원인행위를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

- 사고이월 사유는 당해연도 예산사용 기간이 약 5개월에 불과한데 비해 구조공작차 구매에 7개월의 제작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아니하는 사고이월제도는 예산운영의 신속성 유지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추경 예산이라 할지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소진 될 수 있는 예산만 책정하여 사고이월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임.

[붙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연번	시 정 권 고 사 항	소관실국
1	반복적인 명시이월사업 발생 지양	소방재난본부

1. 반복적인 명시이월사업 발생 지양

가. 현황 및 문제점

소방재난본부의 2015회계연도 사업 중 119안전센터 신설 및 재건축 등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별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율 (%)
119안전센터 신설 및 재건축 (시설비 등)	본예산	1,969	789	1,074	106	54.5
소방행정타운건립 (감리비)	본예산	580	0	580	0	100.0
성동소방서 신설 (시설비 등)	본예산	6,426	5,421	992	13	15.4
특수구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	본예산	3,309	272	3,037	0	91.8
재난대응능력향상 (연구용역비)	본예산	450	0	425	25	94.4
소방차량대폐차 (자산및물품취득비)	본예산	10,076	5,048	5,021	7	49.8
수난구조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본예산	350	0	350	0	100.0
소계(A)		23,160	11,530	11,479	151	49.6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추경예산	3,047	0	3,047	0	100.0
구급장비 교체 및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추경예산	2,627	192	2,435	0	92.7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자산및물품취득비)	추경예산	1,672	505	1,167	0	69.8
소방안전교육강화 (시설비)	추경예산	1,000	112	885	3	88.5
소계(B)		8,346	809	7,534	3	90.3
합계(A+B)		31,506	12,339	19,013	154	60.3

※ 서울소방재난본부 추경예산액 19,410백만 원(2015.8.4.)

위의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5회계연도에서는 명시이월액이 19,013백만원으로 2014회계연도(0건)에 대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015회계연도에 주요예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관부서에서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함에도 명시이월을 통하여 실적부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용도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명시이월에 대한 승인요청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추가경정예산액 확정내역이 2015. 7. 22.통보되어 추경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시정권고

예산의 편성 시에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해당사업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사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명시이월 사업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